#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나47990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1. 주식회사 B

2.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영

변 론 종 결 2021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. 20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13. 선고 2020가단14336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 ~ 10행의 “2019. 4. 24. ~ 하였다.“를 ”2019. 4. 24. 피고 B에 공사대금 540,000,000원(부가세 별도)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도급’이라고 한다), 피고 B은 2019. 5. 21. 다시 원고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94,000,000원(부가세 별도)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하도급’이라 한다).“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2쪽 11행 “원고와 피고 B은 ‘ 구조설계안 변경으로 인한 납기 및 공사대금(추가공사포함) 지급조건 변경 ’을 사유로”를 “원고와 피고 B은 공사 완료일인 2019. 8. 15.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자 2019. 9. 20.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‘ 구조설계안 변경으로 인한 납기 및 공사대금(추가공사포함) 지급조건 변경 ’을 사유로 아래 내용의 각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.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 [인정근거]에 “갑 제6, 15호증의 각 기재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7쪽 14행의 “17” 다음에 “, 18”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7쪽 16행, 제8쪽 9행의 각 “피고 B이”를 “피고 B의 사내이사인 J이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의 “피고 B이”를 “원고 주장대로 J이 피고 B의 실질적 사주라 하더라도, 위 J이”로 고친다.

**2. 결 론**

그렇다면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　　판사 구광현, 판사 최호식, 판사 이정형